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 대한 경비 등 지원 근거 마련〉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006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02. 07.
3. 회 부 일 : 2025. 0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새마을운동조직은 생활환경 개선, 취약계층 돌봄, 재난 구호 활동 등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조직으로, 그 장에 대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조의2(수당 등의 지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새마을운동조직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환경 개선, 재난구호, 취약계층 돌봄 등 공익활동에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수행하는 공적 역할에 비해 조직의 장에 대한 수당, 여비 등의 현실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개정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를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같은 국민운동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에 대한 수당, 여비 등의 지급을 법률로 제도화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의미함¹⁾.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새마을 조직의 장은 약 1만2,000명으로 이들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730억원이 소요²⁾될 것이라는 설명인데 과도한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인 새마을조직의 장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타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우려, 과도한 재정부담

1)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이·통장 활동보상금 기준인 연 608만원으로 계산시(12천명×608만원)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기획재정부는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운영중인 단체의 임원에 대해 수당 등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조직의 자율적인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8

참고

새마을운동 조직 및 회원수 현황('24.12월말 현재, 단위:명)

□ 조직체계



※ 18개 지부(이북5도 포함), 228개 지회(제주2), 3,533개 분회

□ 전국 새마을 회원수 및 시도 이하 회장단 현황

○ 시도·시군구·읍면동 회장단 현황

구분	계	새마을지부 및 지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직장· 공장협의회	새마을문고회
합계	11,757	235	3,457	3,608	2,572	1,885
시도	86	18	18	18	15	17
시군구	930	217	219	226	103	165
읍면동	10,741	-	3,220	3,364	2,454	1,703

○ 전국 새마을 지도자 및 회원 현황

구 분	계	새마을지부 및 지회	새마을지도 자 협의회	새마을부녀 회	새마을직장· 공장협의 회	새마을문고 회
합계	1,796,931	79,217	234,417	1,088,634	18,023	376,640
지도자	169,010	1,878	69,636	78,956	2,572	15,968
회원	1,627,921	77,339	164,781	1,009,678	15,451	360,672